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7-01-62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7-01-6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252-000111-01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연구책임자: 송 향 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7-01-6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252-000111-01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연구책임자: 송 향 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 년 12월 21일

연구책임자: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연구 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연구책임자 송향근

공동연구원 김정숙(고려대학교)

박동호(경희대학교)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목표

본 연구는 커져 가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인력을 조사·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 부여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인력을 조사하고 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연수 제도 등)을 제안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수급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없고 교육 기관별, 혹은 지원 기관별로 이루어져 왔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기초 조사로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급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국외의 경우, 대학이나 세종학당, 문화원이나 교육원, 한국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

육 능력을 갖춘 교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도 여성 결혼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대개 비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교육 현장에 적절히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교원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특히 2016년까지 국외에 2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을, 역량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시행 및 한국어 교육의 발전, 나아가 국가 홍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3. 연구 내용

1) 자료 조사

첫째, 국내외 공적 기관(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원 파견 국외 대학, 세종학당, 초중등학교,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의 현황(수,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 여부, 경력 등)을 파악한다.

둘째, 향후 4년 간(2008년~2011년) 교육 기관별 한국어 교사의 수요를 파악한다.

셋째,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한다.

2) 연구

첫째, 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교원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한다.

둘째, 세종학당이나 국가 파견 해외 교육기관, 다문화 가정 및 귀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 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어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4. 연구 방법

○ 자료 조사
○ 자료 분석 및 연구
○ 전문가 초빙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한국어 교원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한국어 교육은 국내·외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양적 성장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 한류의 급속한 확산, 한국 대학 교육 기관의 질적 성장에 기인한 바 크다.

우선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을 중추적으로 담당해 온 곳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들인데 이들은 초기 단계에 시작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 교육 기관의 질적 성장에 따라 최근의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수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한국어 교원의 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드디어 백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매혹적 나라가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려는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정착하려는 결혼 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7,382쌍이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에 국제결혼을 한 부부 가운데 외국인 부인의 비율이 76.1%에 달한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 2,885건으로 35.9%를, 2006년에는 3,525건으로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현상은 더욱 절대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러한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결혼 이민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 노동자들은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력 또한 필요하게 되

1)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통계에 대해서는 소라미(2007)를 참고할 것.

었다. 또한 급속한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할 인력들도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국외에 장·단기적으로 거주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들의 자녀가 한국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등에 재입학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국외의 한국어 교육 상황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타 국가에 소개하는 동시에 국가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통한 발전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세종학당 사업이다. 세종학당은 국립국어원과 국외대학이나 현지 한국문화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현지에 설치되는데 현재 6개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수하는 교원은 한국 파견 교원과 현지 교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질 있는 교수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야 하며 동시에 현지의 교원들로 하여금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 국제적 영향력 증대, 한류의 확산에 따라 국외의 여러 정규 대학에서도[2] 한국학 또는 한국어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상당 수준의 전문적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들은 한국어가 비모국어인 현지인과 모국어인 한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다시 해당 대학에서 직접 임용한 경우와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파견한 경우로 나뉜다. 파견 인력들은 주로 안식년을 맞거나 특수 연구 목적을 가진 대학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직이나 연구직을 찾고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되며 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3] 한편,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현지 대학들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

2) 국제교류재단(2007)에 따르면 2005년 말 해외 한국학 강좌 개설 대학을 62개국 735개 처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학들에 한국어 관련 학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학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연구자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어교육학 석사 학위 소지자들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전술한 국외 대학의 경향은 결국 2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수요 증가의 결과를 낳고 있다.

국외 한국교육원은 재외 동포 및 현지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개국 34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총 45명이다. 예를 들어, 13개 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이나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경우에는 4개국 7개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려인이나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현지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주 학습자가 성인이란 점에서 이 기관에서는 국외 한글학교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이 요구되며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원이 필요하다.

한편, 국외 한글학교는 전 세계에 걸쳐 한국어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7년 말 현재 2,097개교에서 14,172명의 교원이 재외동포 한국인 1.5세 내지 2세 이상 127,1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4] 주로 주말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며 주당 교육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으며 주로 현지 교민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이들 기관은 전문적 한국어 교육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교원 자격은 기존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5]

전술한 모든 상황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질적 자질을

---

3)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7년 26개국 29개 대학에 한국학 관련 교수를 파견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7년 30개국 45개 대학의 총 263개 강좌 운영에 지원을 하였고 2008년에는 18개국 29개 대학에 한국어 원어민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07년 대학을 포함하여 해외 여러 기관에 총 194명의 한국어 강의 봉사요원을 파견하였다.

4) 이 수치는 재외동포재단(2007)을 참고하였다.

5) 이외에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한국학교와 사설학원도 있다. 한국학교는 2007년 말 현재 14개국 26개교에서 총 9,4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798명(파견 교원 72명 포함)의 교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란 점에서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설학원은 특히 중국과 일본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 정확한 통계가 없는 관계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갖춘 보다 많은 수의 한국어 교원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장은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조사 대상을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대별한 후 다시 전자를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일반 외국인을 위한 자원 봉사 기관, 한국어 학원으로 나누고 후자를 세종학당, 국외 대학, 한국교육원, 기타 기관으로 나누어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수, 그들의 자격 보유 여부와 자격 종류, 학력 및 교육 경력 등을 살펴볼 것이며[6] 향후 이들 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 보유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 자격 소유자의 총수, 경력 등을 살펴보고 향후 4년 간의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예측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 자격 소유자의 수와 향후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비교, 검토하면서 향후 한국어 교원 수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1. 한국어 교원의 현황

2.1.1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2.1.1.1.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1) 양적 현황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 수를 조사해 보고자 했다. 총 16개 기관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7]

---

6) 전술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의 조사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상 조사가 원활히 이루지지 못한 사항들도 있다. 특히, 기관에 따라 교원 자격 보유 현황과 교육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조사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7)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 참여 기관 54개를 포함하여 총 60개의 대학 기관에 조사서를 메일로 발송하였고 조사 기간 내에 16개교가 응답해 주었다. 응답해 준 대학 기관의 목록(가, 나, 다 순)은 다음과 같다. 경희대(국제캠퍼

<표 1>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6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3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0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1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45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55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0 (정규 학기의 시간강사로 운영)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1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0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8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5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3
O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45
P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89
합계	401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25.06
총 교원 수	25.06 X 60 = 1503.6[8]

스), 고려대, 동명대, 부경대, 부산외대, 서울대, 선문대, 신라대, 아주대, 영산대, 원광대, 우석대, 이화여대, 한국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호남대

8) '1503.6'은 <기관 당 평균 교원 수>에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교와 기타 6개교를 합한 수인 60을 곱해서 산출한 결과이다. 이들 대학 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가야대	2	강릉대	3	건양대	4	경동대
5	경북전문대	6	경희대	7	계명대	8	고려대
9	공주대	10	남서울대	11	단국대	12	대구공업대
13	국민대	14	대구대	15	대구가톨릭대	16	덕성여대
17	동국대	18	동방대학원대	19	동의대	20	두원공과대

<표 1>에 조사된 대학 기관들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을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점에 있어서 이 보고서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이와 같은 조사를 위해서는 각 대학 기관의 적극적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사된 기관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관 당 평균 25명의 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경력

<표 2>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자격증 소지자 수	기관 당 자격증 소지 비율(%)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6명 (2급 15명, 3급 1명)	2급: 93.75% 3급: 6.25% 전체 비율: 100%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3 명 (2급 2명, 3급 5명)	2급: 8.7% 3급: 21.74% 전체 비율: 30.43%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09년 개설 준비 중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1 명 (2급 1명)	2급: 4.76%
E 대학교 한국어	총 45명	

21	동명대	22	목포대	23	명지대	24	배재대
25	백석대	26	부산대	27	부산외대	28	상명대
29	서울대	30	서원대	31	성덕대	32	순천향대
33	송호대	34	선문대	35	영산대	36	우석대
37	울산대	38	원광대	39	위덕대	40	이화여대
41	인하대	42	전남대	43	조선이공대	44	전주기전대
45	청운대	46	충남대	47	탐라대	48	호남대
49	한국외대	50	한국정보통신대	51	한국항공대	52	한국해양대
53	한세대	54	한양대	55	경기대	56	경희대(국제캠)
57	부경대	58	신라대	59	아주대	60	호남대

교육원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5명 (3급 15명)	3급: 100%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55명 (2급 12명, 3급 31명)	2급: 21.82% 3급: 56.36% 전체 비율: 78.18%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시간 강사를 채용하고 있음. 학기 중이 아닐 때는 강사가 없음.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1명 (2급 3명, 3급 3명)	2급: 27.27% 3급: 27.27% 전체 비율: 54.55%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0명 (2급 2명, 3급 1명)	2급: 20% 3급: 10% 전체 비율: 30%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0명 (2급 11명, 임시교사 6명)	2급: 55%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8명 (2급 3명, 3급 8명)	2급: 16.67% 3급: 44.44% 전체 비율: 61.11%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5명 (2급 11명)	2급: 44%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3명 (3급 1명)	3급: 7.69%
O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45명 (2급 11명, 3급 24명)	2급: 24.44% 3급: 53.33% 전체 비율: 77.77%
P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89명 (2급 34명, 3급 10명)	2급: 38.20% 3급: 11.23% 전체 비율: 49.43%
합계	401 (1급 0명, 2급 105명, 3급 99명)	1급: 0%, 2급: 26.18%, 3급: 24.69% 전체 비율: 50.87%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 기관에 따라 자격 보유 현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 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교원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2급을 93.75%, 3급을 6.25% 보유하고 있다. 한편, B 대학의 경우에는 총교원의 30.43%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급은 8.7%, 3급은 21.74%이다. F 대학의 경우에는 총 15명의 교원 모두가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표본 조사한 16개 대학의 총교원 수는 401명이며 이 중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2급 105명, 3급 99명으로 전체 교원의 50.87%에 해당한다. <표 2>는 비율에 있어 기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교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 3>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경력

한국어 교원 교육 경력	비율(%)
1년 미만	0
1년 이상 ~ 2년 미만	16.67
2년 이상 ~ 3년 미만	59.17
3년 이상 ~ 4년 미만	16.67
5년 이상	7.49
합계	100

조사가 이루어진 16개 대학 기관 중 고려대, 서울대, 선문대, 이화여대 등과 같은 기관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따라서 2년 이상 ~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원의 수가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원의 수가 가장 적었다. 조사에 미응답한 교육기관들도 상당수가 설립 후 운영기간이 5년 내외란 점에서 교원의 교육 경력 상황은 비슷하리라 추정된다.

3) 사회적 수요

아래 표는 각 대학 기관이 향후 5년간에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어 교원의 수이다.

<표 4 > 대학 기관별 향후 4년 간 채용 예상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3~5	미정	미정	미정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10	15	10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4~12	6~12	8~15	10~15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3	2~3	5	5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3	3	3	3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	3	미정	미정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	20	20	20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18	20	23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O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7	10	5	5
P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0	10	10	10
합계	80~91	85~89	86~93	86~91
평균	85.5	87	89.5	88.5
기관 당 필요한 평균 교원 수	8.55	9.67	11.19	11.06
필요한 총 교원 수[9]	513.00	580.20	671.40	663.60

<표 4>에서의 '미정'은 해당 대학 기관에서 아직까지 채용 교원 수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관 당 채용 예정인 평균 교원 수를 산출할 때에는 미정 기관의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8년 기관 당 필요한 평균 교원 수는 '85.5/10=8.55', 2009년은 '87/9=9.67', 2010년은 '89.5/8=11.19'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었다.[10)]

2.1.1.2.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1) 양적 현황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골자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인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 힘입어 현재에는 대략 4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표 5>는 이들 기관에서 자원 봉사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수를 보여준다.

<표 5>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원 수[11)]

교육 기관 명	2007년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28

9) 이 수들은 <기관 당 필요한 평균 교원 수>에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교와 기타 6개교를 합한 수인 60을 곱해서 산출한 결과이다.

10) 채용 예상 교원 수 항목에 미정이라 답한 교육기관들이 많다는 점은 향후 4년간의 예상을 질문하였기에 답을 하기 어려웠으리라는 면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어 학습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교육기관들이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 국내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목록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홈페이지(http://www.iakle.com), 한국어 교사 카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의 교원 수나 자격 보유 등에 관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조사했다.

외국어비전센터	10
수원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20
한국 이주노동자 복지회	37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	10
외국인 노동자 학교	5
합계	110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18.3

조사된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표 5>의 기관 외에도 '마포구청과 함께 하는 서강 한국어 교실', '부천 노동복지회관', '부산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한국 CLC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등이 있는데 이 기관들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수를 조사하는 데 협조를 얻을 수가 없었다. 물론 이 기관들 외에도 전국에 수많은 기관이 산재하고 있으며 <표 5>는 단지 일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기관 당 평균 교원 수를 보여주고 있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표 6>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 명	자격증 소지자 수 (2007년)	기관 당 자격증 소지 비율(%)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총 28명 중 28명	100%
외국어비전센터	총 10명 중 1명	10%
수원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총 20명 중 2명	10%
한국 이주노동자 복지회	총 37명 중 4명	10.8%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외국인 노동자 학교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합계	총 95명 중 35명	36.8%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 여부는 4곳밖에 알 수 없었다. 응답을 하지 않은 기관들은 한국어 교육이 자원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었던 두 기관의 교원 수는 총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주 노동자 한국어 기관 교원들의 경력 및 학력은 조사할 수 없었다.

3) 사회적 수요

<표 7 >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별 향후 4년 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국어비전센터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수원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5	미정	미정	미정
한국 이주노동자 복지회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	3	미정	미정	미정
외국인 노동자 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가 유동적인 관계로 교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 5명과 3명이라고 각각 답한 '수원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와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들은 '미정'이라고 답하였다.

2.1.1.3.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12)]

1) 양적 현황

<표 8>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7년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외국어비전센터	10
수원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20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
인천종합사회복지관	3
오산종합사회복지관	3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1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	10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
부산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	3
합계	53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5.9

조사가 진행된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은 <표 8>에 열거된

12)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목록은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작성하였으며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여 교원 수, 한국어 교육 자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기관 외에도 '마포 구청과 함께 하는 서강 한국어 교실',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표 8>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표 8>의 기관 외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경력

<표 9>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자격증 소지자 수(명)	기관 당 자격증 소지 비율(%)
외국어비전센터	총 10명 중 1명	10%
수원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총 20명 중 2명	10%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2명 중 1명	50%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오산 행복한 이주민센터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부산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합계	총 32명 중 4명	12.5%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육도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원봉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어떤 기관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존재 유무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 경력 또한 조사할 수 없었다.

3) 사회적 수요

<표 10 >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별 향후 4년 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외국어비전센터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수원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5	미정	미정	미정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	미정	미정	미정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2	미정	미정	미정
오산 '행복한 이주민센터'	3	미정	미정	미정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부산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	미정	미정	미정	미정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부산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합계	11			

평균	2.8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도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 계획 하에 학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기의 수요에 따라 학급을 증설하므로 한국어 교원 채용 인원을 예상할 수 없다고 대부분 대답하였다.

2.1.1.4.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13)]

1) 양적 현황

<표 11>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총교원 수(명)
근흥초등학교	1
다문화국제학교	5
부산 아시아 공동체 학교	3
시화초등학교	1
안산 원일초등학교	1
강릉시 문화원	3
안산 용신평생교육원	18
청주 한글 사랑관	2
충남평생교육원 한국문화교육센터	20
합계	54

13)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목록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각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한국어 교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6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학교는 초등학교나 대안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 기관과 비정규 교육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근흥초등학교', '다문화국제학교', '부산 아시아 공동체 학교', '시화초등학교', '안산 원일초등학교' 등은 전자에 속하며 '강릉시 문화원', '안산 용신평생교육원', '청주 한글 사랑관', '충남평생교육원 한국문화교육센터' 등은 후자에 속한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표 12>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자격증 소지자 수(명)	기관 당 자격증 소지 비율(%)
근흥초등학교	총 1명 (초등 퇴임 교사) 중 0명	0%
다문화국제학교	총 5명 중 0명	0%
부산 아시아 공동체 학교	총 3명 중 0명	0%
시화초등학교	총 1명 (초등 교사) 중 0명	0%
안산 원일초등학교	총 1명 (초등 교사) 중 0명	0%
강릉시 문화원	총 3명 중 0명	0%
안산 용신평생교육원	총 18명 중 0명	0%
청주 한글 사랑관	총 2명 중 0명 (퇴직 초등 교사 또는 현직 초등교사)	0%
충남평생교육원 한국문화교육센터	총 20명 0명 (퇴직 초등 교사 또는 현직 초등교사)	0%
합계	54명 중 0명	0%

다문화 가정을 자녀를 위한 특별 학교의 한국어 교원은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정규 교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대부분 소지하고 있지 못했다. 이들은 정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교수해야 하므로 향후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조사가 불가능했다.

3) 사회적 수요

<표 13>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별 향후 4년 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근흥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다문화국제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부산 아시아 공동체 학교	3	미정	미정	미정
시화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안산 원일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강릉시 문화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안산 용신평생교육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청주 한글 사랑관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충남평생교육원 한국문화교육센터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합계	3			

향후 교원의 채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산 아시아 공동체 학교'만이 2008년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이

들 대부분은 기관의 특성상 교사 채용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하므로 향후 교원의 수급 계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2.1.1.5.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14)]

1) 양적 현황

<표 14>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총교원 수(명)
고양 금계초등학교	2
대덕초등학교	3
부천 상도초등학교	6
서울 당현초등학교	2
서울 목원초등학교	2
서울 신천초등학교	3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3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6
안양 호원초등학교	2
서울 언주중학교	1
합계	30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3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

14)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의 목록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교원의 현황은 각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하여 조사하였다. 이 목록은 표본 자료이며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그들의 자녀가 현지에서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의 귀국 후 한국어 교육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표 14>의 초·중학교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원의 수는 국제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 국민의 귀국 자녀를 위한 것이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것은 아니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표 15>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자격증 소지자 수(명)	기관 당 자격증 소지 비율(%)
고양 금계초등학교	총 2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대덕초등학교	총 3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부천 상도초등학교	총 6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서울 당현초등학교	총 2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서울 목원초등학교	총 2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서울 신천초등학교	총 3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총 3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총 6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안양 호원초등학교	총 2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서울 언주중학교	총 1명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 0명	0%

합계	30명 30명 전원 정규 초·중등 교사	0%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국 자녀를 위한 특별반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초등 또는 중등 정규 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조사할 수 없었다.

3) 사회적 수요

<표 16>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별 향후 4년 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고양 금계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대덕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부천 상도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울 당현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울 목원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울 신천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안양 호원초등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울 덕수중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서울 언주중학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초·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국 자녀 특별반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향후 교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2.1.1.6. 일반 외국인을 위한 자원 봉사 기관[15]

1) 양적 현황[16]

<표 17> 일반 외국인을 위한 자원 봉사 기관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총교원 수(명)
가산동주민자치센터	1
해외입양인연대	조사 불가능
KIH월드빌리지	조사 불가능

2.1.1.7. 한국어 학원[17]

1) 양적 현황

<표 18> 한국어 학원의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15) 일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여 조사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에 비해서 일반 외국인을 위한 자원 봉사 기관은 수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 이유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그들의 한국어 교육을 맡고자 하는 사회봉사 단체가 많은 반면 일반 외국인들은 대부분 정규 대학기관이나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이다.
16) 일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교육 경력은 조사할 수가 없었다.
17) 한국어 학원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학원 목록을 작성하고 각 학원에 전화를 하여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베스트프렌드 외국어 문화 교류원	10
YBM 시사어학원	3
가나다어학원	30
서울한국어아카데미	20
합계	63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15.8

<표 18>은 일부 학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이며 따라서 자료가 더 보완된다면 '기관 당 평균 교원 수'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표 19> 한국어 학원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자격증 소지자 수(명)	기관 당 자격증 소지 비율(%)
YBM 시사어학원	총 3명 2급 3명	2급 100%
베스트프렌드 외국어 문화 교류원	총 10명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가나다어학원	총 30명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서울한국어아카데미	총 20명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 불가능	
합계	총 3명 2급 자격 소지자 3명	

조사 결과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교원 자격증의 소지를 채용 조건으로 삼는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원들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 여부 조사가 불

가능하였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들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12.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은 세종학당, 국내에서 교원을 파견하거나 지원하는 국외대학, 한국 교육원으로 한정된다. 세종학당은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며 국외대학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교원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국 교육원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편, 국외 한글학교 등은 국내에서 교원을 직접 파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기타 교육 기관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2.1.2.1. 세종 학당

1) 양적 현황

세종 학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게 될 교원의 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종 학당의 단계별·연차별 설립 계획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세종 학당 백서(2007)'에 따르면 세종 학당의 단계별·연차별 설립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0> 제1단계(2007년~2011년) 100개교[18]

지역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몽골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25개교
중국	10개교	10개교	10개교	15개교	15개교	60개교
중앙아시아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15개교
계	18개교	18개교	18개교	23개교	23개교	100개교

18) <표 20>, <표 21>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세종학당 백서(2007)'을 참고하였다.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제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몽골 5개교, 중국 10개교, 중앙아시아 3개교 설치를 필두로 하여 2011년에 이르면 몽골 25개교, 중국 60개교, 중앙아시아 15개교로 확장될 예정이다.

<표 21> 제2단계(2012년~2016년): 100개교

지역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중동, 아프리카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50개교
북미, 유럽, 중남미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50개교
계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100개교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종 학당 설립 계획은 2012년부터 제2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설립 대상 지역이 중동, 아프리카, 북미, 유럽, 중남미로 확대될 예정이다. 매년 20개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0개의 세종학당이 설립될 예정이다.

세종 학당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교당 한국어 교원의 수는 10명 이상인데 이들을 현지 대학(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전임강사 이상)과 국내에서 파견한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전문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학당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설립 연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국외 현지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당분간은 한국에서 파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학교당 5명의 국내 인원인 파견되고 나머지 5명은 현지에서 인증과정을 걸쳐 선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2>는 이와 같은 예상에 근거하여 산출된 2007년 세종 학당에서 필요로 하는 예상 한국어 교원 수이다.[19]

19) <표 22>와 <표 23>의 작성을 위하여 2008년 발간 예정인 '세종 학당 연구 용역 보고서'의 '세종 학당 설립 및 운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표 22> 2007년 세종 학당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파견 교원 수

국가 명	예상 한국어 교원 수(명)
몽골(5개소)	5
중국(10개소)	10
중앙 아시아(3개소)	3
합계	18

<표 22>는 2007년에 한국에서 파견 예정인 국가별 교원 수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세종 학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다른 국가에도 세종 학당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파견 교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지 세종학당을 운영함에 있어 파견 교원과 현지 교원 수의 비율, 현지 교원의 재교육 문제 등이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경력

세종 학당 한국어 교원의 학력, 교육 경력은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파견되는 세종 학당 파견 교원의 지원 자격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이므로 국내 파견 교원 전원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사회적 수요

<표 23> 기관별 향후 4년 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파견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몽골	10	15	20	25
중국	20	30	45	60
중앙 아시아	6	9	12	15
합계	36	54	77	100

결과를 참고하였다.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몽골에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개의 세종 학당이 설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학당과 신설 학당에 매년 1명의 교원이 충원될 것으로 가정하면 2008년 10명, 2009년 15명, 2010년 20명, 2011명 25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는 2008년 10개, 2009년 10개, 2010년 15개, 2011년 15개의 세종 학당이 설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8년 20명, 2009년 30명, 2010년 45명, 2011명 60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에도 2007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개의 세종 학당이 설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학당과 신설 학당에 매년 1명의 교원이 충원될 것으로 가정하면 2008년 6명, 2009년 9명, 2010년 12명, 2011명 15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예상을 바탕으로 하면 2008년 36명, 2009년 54명, 2010년 77명, 2011년 100명의 교원이 필요하게 된다. 즉,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7명의 교원이 필요하게 된다.[20] 물론 이와 같은 예측은 각 학당이 최소한의 인원을 매년 충원해 간다고 간정했을 때의 수치이며 이보다는 더 많은 교원의 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1.2.2. 국외 대학[21]

1) 양적 현황

<표 24> 2007년 국외대학 파견 한국학, 한국어 교원 수

파견 기관	대학 명	2007년 파견 교원 수(명)
한국국제교류재단	이란 테헤란대학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요르단 Univ. of Jordan	1~2

20) 물론 이 수치에는 <표 21>의 제2단계(2012년~2016년) 세종 학당 설립 시 필요한 교원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 국외대학 파견 교원 현황은 한국국제교류재단(http://www.kf.or.kr), 국제협력단(https://www.koica.go.kr), 한국학 중앙 연구원(http://www.aks.ac.kr), 국제한국어교육학회(http://www.iakle.com)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요르단 Univ. of Jordan	1~2
국제협력단	요르단 Univ. of Jordan	2
한국학중앙연구원	태국 Burapha University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카자흐스탄 Kazakh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al Farabi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키르키즈공화국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1~2
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바탐방 국립경영대학교	1
한국국제교류재단	방글라데시 다카대학 (Univ. of Dhaka)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 (Univ. of Kelaniya)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싱가폴 국립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2
한국국제교류재단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Malaya Univ.)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 중산대 (Sun Yat-Sen Univ.)	1~2
국제협력단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학	1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 하노이국립 외대	1~2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 달랏대 (Univ. of Dalat)	1~2
국제협력단	베트남 국립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1
국제협력단	베트남 국립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1
국제협력단	베트남 달랏대학교	1
국제협력단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	1

국제협력단	베트남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1
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경제대학교	1
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동방대학교	2
국제협력단	이집트 헬완 대학교	1
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교	1
국제협력단	파키스탄 국제어학대학교	1
한국국제교류재단	독일 Univ. of Regensburg	1
한국국제교류재단	스페인 Univ.of Salamanca	1
한국국제교류재단	이탈리아 University of Rome	1
한국국제교류재단	노르웨이 University of Oslo	1
한국국제교류재단	영국 University of Oxford	1
한국국제교류재단	폴란드 Warsaw University	1
한국학중앙연구원	폴란드 Uniwersytet im. Adama Mickiewicza	1~2
한국국제교류재단	헝가리 Eotvos Lorand University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헝가리 Eötvös Loránd University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우크라이나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of Kyiv	1~2
국제협력단	우크라아나 도네츠크 국립경상대학교	1~2
국제협력단	우크라이나 르보프 국립대학교	1~2
한국학중앙연구원	루마니아 University of Bucharest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1~2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1~2
한국국제교류재단	터키 에르지예스대학	1~2

한국학중앙연구원	독일 Eberhard-Karls-University of Tübingen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체코 Charles University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오스트리아 Leopold-Franzens University of Innsbruck	1~2
한국학중앙연구원	독일 Universität Bonn	1~2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2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Rice University	1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Rutgers University	2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SUNY Albany	1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SUNY Binghamton	1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SUNY Buffalo	1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Wellsley College	1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1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1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Yale University	2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ton	1~2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국 Emory University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
한국국제교류재단	멕시코 Colegio de Mexico	1
한국학중앙연구원	멕시코 University Autonomous of Nayarit	1~2
국제협력단	페루 UNSAAC대학	1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 of Sydney	2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 of New South Wales	2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1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로코 모하메드 5세 대학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집트 아인샴스대	3
	합계	77~109
	대학 당 평균 교원 수	1.1~1.6

<표 24>는 각 국외대학으로 한국에서 연간 파견되는 교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지원을 받으며 현지에서 한국학이나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다. 최근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으로 한국어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이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 외교적 영향력 증대, 한류의 파급 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국외대학으로 파견되는 교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국외대학 기관의 교원으로는 주로 한국어문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파견되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학 석사 학위 이상자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파견 인원 중 과거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5> 국외대학 파견 교원 자격 요건

파견 기관	대학 명	교원 자격
한국국제 교류재단	이란 테헤란대학	·국어국문학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박사 학위자
한국국제 교류재단	요르단 Univ. of Jordan	·국어국문학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학위자 (석사학위 재학 중인 자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국어국문학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박사 학위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요르단 Univ. of Jordan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경험자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Univ. of Jordan	·석사이상, 영어 또는 아랍어로 교육이 가능한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태국 Burapha University	·국어국문학 또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박사수료자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자 ·현지어(태국어) 구사 가능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카자흐스탄 Kazakh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al Farabi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러시아어(또는 카자흐어)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러시아 지역학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학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박사 수료인 경우, 러시아어 또는 카자흐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키르키즈공화국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러시아어 구사 가능자 ·중앙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키르키즈스탄 지역 한국학 교육 경험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한국학을 강의할 수 있는 자로서 (국어국문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 ·한국학과 신설에 수반되는 교과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바탐방 국립경영대학교	·대졸 ·경력 5년 이상
한국국제교류재단	방글라데시 다카대학 (Univ. of Dhaka)	·국어국문학박사,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 박사 학위 소지자 ·2년간 현지체류 가능하신 분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국국제 교류재단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 (Univ. of Kelaniya)	·국어국문학박사,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 박사 학위 소지자 ·2년간 현지체류 가능하신 분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국국제 교류재단	싱가폴 국립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경력(3-4년)이 있는 응용언어학 석사학위 소지자 ·두 전공 공히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미만자로서 영어 능통자 (강의 언어가 영어임) ·2년간 현지체류 가능하신 분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국국제 교류재단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Malaya Univ.)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 박사학위 소지자 ·2년간 현지체류 가능하신 분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국국제 교류재단	중국 중산대 (Sun Yat-Sen Univ.)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 박사학위 소지자 ·2년간 현지체류 가능하신 분 ·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분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국국제 협력단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학	·전공학과 졸업 ·자격증 소지자
한국국제 교류재단	베트남 하노이국립 외대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 박사학위 소지자 ·2년간 현지체류 가능하신 분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국국제 교류재단	베트남 달랏대 (Univ. of Dalat)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석, 박사학위 소지자 ·2년간 현지체류 가능하신 분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국립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전공학과 졸업 ·교사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국립 호치민 인문 사회 과학대학교	·전공학과 졸업 ·교사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달랏대학교	·전공학과 졸업 ·교사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	·전공학과 졸업 ·교사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전공학과 졸업 ·교사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경제대학교	·대졸 ·경력 2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우즈베키스탄 동방대학교	·석사 ·경력 2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이집트 헬완 대학교	·대졸 ·경력 2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교	·석사 ·경력 2년 이상
한국국제 협력단	파키스탄 국제어학대학교	·대졸 ·자격증 소지자
한국국제 교류재단	독일 Univ. of Regensburg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 교류재단	스페인 Univ.of Salamanca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 교류재단	이탈리아 University of Rome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 교류재단	노르웨이 University of Oslo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 교류재단	영국 University of Oxford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 교류재단	폴란드 Warsaw University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학중앙 연구원	폴란드 Uniwersytet im. Adama Mickiewicza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한국어과 학과장의 임무와 석사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역할을 수행 ·폴란드어 능통자(석사논문 지도 및 강의) ·폴란드 문학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
한국국제 교류재단	헝가리 Eotvos Lorand University	·한국학 (한국어, 문화, 역사, 민속학 등) 전공자 ·관련 분야 전공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 ·2년 이상 현지 체류 가능한 분 (최초 1년 근무 후, 해당 대학과 파견 교수 양측이 동의할 시 연장 가능) ·대학 내 한국학 과정 개설 및 정착을 주도하실 분
한국학중앙 연구원	헝가리 Eötvös Loránd University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한국학 관련 전공자 ·헝가리어 및 영어 구사 가능자
한국학중앙 연구원	우크라이나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of Kyiv	·한국학 관련 전공자 ·한-우크라이나 비교언어학 또는 문학 박사 학위 소지자
한국국제 협력단	우크라아나 도네츠크 국립경상대학교	·관련학과 졸업
한국국제 협력단	우크라이나 르보프 국립대학교	·관련학과 졸업 ·자격증 소지자
한국학중앙 연구원	루마니아 University of Bucharest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루마니아 어학 또는 문학박사

		(루마니아어로 강의가 가능한 자) ·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영어로 강의가 가능한 자) · 석사의 경우,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 국내외에서 2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 아제르바이잔어 구사가 가능하고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 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 통번역 경력을 가진 자 · 국내에서 통·번역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 불가리아어로 강의가 가능한 자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가 가능한 언어학 박사학위 소지자 ·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경험자
한국국제교류재단	터키 에르지예스대학	· 국어교육학 또는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간 현지 체류가능한 사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일 Eberhard-Karls-University of Tübingen	· 한국학 전공자로 한국학과 강의 경험이 있고 한국입문, 한국현대사, 한자를 독일어로 강의할 수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체코 Charles University	·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전임교수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오스트리아 Leopold-Franzens University of Innsbruck	·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 독일어로 한국어를 강의할 수 있는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독일 Universität Bonn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통역학, 응용언어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독일어 능력 우수자 (번역 및 수업에 사용하는) · 행정 업무 및 공동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3년 이상 장기 파견이 가능한 자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Rice University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Rutgers University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SUNY Albany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SUNY Binghamton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SUNY Buffalo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Wellsley College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Yale University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ton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강의해 본 경험이 있는 자 ·미국에서 강의경험이 있는 자 우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국 Emory University	·국어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자 우대 ·대학 강의 경험자로 한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자
한국국제교류재단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멕시코 Colegio de Mexico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학중앙연구원	멕시코 University Autonomous of Nayarit	·한국어 교육 전공자
국제협력단	페루 UNSAAC대학	·전공학과 졸업 ·경력자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 of Sydney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 of New South Wales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자료를 구할 수 없음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로코 모하메드 5세 대학	·한국학 관련분야 전공자 ·아랍어로 강의가 가능한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집트 아인샴스대	·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국문학, 국어교육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 소지자로 공식기관에서 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영어로 한국어 강좌 강의가 가능한 자 ·1년 6개월 이상 현지체류 가능한 자 ·현지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비고: 박사과정 수료자로 강의경력이 없는 자나 비한국어 전공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3) 사회적 수요

<표 26> 향후 4년 간 국외대학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 수

파견 기관	교육 기관 명	2008년(명)	2009년(명)	2010년(명)	2011년(명)
한국국제교류재단	이란 테헤란대학	1~2	1~2	1~2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요르단 Univ. of Jordan	1~2	1~2	1~2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요르단 Univ. of Jordan	1~2	1~2	1~2	1~2
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Univ. of Jordan	2	2	2	2
한국학중앙연구원	태국 Burapha University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카자흐스탄 Kazakh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al Farabi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키르키즈공화국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1~2	1~2	1~2	1~2
한국국제 협력단	캄보디아 바탐방 국립경영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방글라데시 다카대학 (Univ. of Dhaka)	1~2	1~2	1~2	1~2
한국국제 교류재단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 (Univ. of Kelaniya)	1~2	1~2	1~2	1~2
한국국제 교류재단	싱가폴 국립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2	1~2	1~2	1~2
한국국제 교류재단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Malaya Univ.)	1~2	1~2	1~2	1~2
한국국제 교류재단	중국 중산대 (Sun Yat-Sen Univ.)	1~2	1~2	1~2	1~2
한국국제 협력단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학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베트남 하노이국립 외대	1~2	1~2	1~2	1~2
한국국제 교류재단	베트남 달랏대 (Univ. of Dalat)	1~2	1~2	1~2	1~2
한국국제	베트남 국립 하노이	1	1	1	1

협력단	외국어대학교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국립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달랏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	1	1	1	1
한국국제 협력단	베트남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경제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협력단	우즈베키스탄 동방대학교	2	2	2	2
한국국제 협력단	이집트 헬완 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협력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협력단	파키스탄 국제어학대학교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독일 Univ. of Regensburg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스페인 Univ.of Salamanca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이탈리아 University of Rome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노르웨이 University of Oslo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영국 University of Oxford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폴란드 Warsaw University	1	1	1	1
한국학중앙 연구원	폴란드 Uniwersytet im. Adama Mickiewicza	1~2	1~2	1~2	1~2

한국국제 교류재단	헝가리 Eotvos Lorand University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헝가리 Eötvös Loránd University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우크라이나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of Kyiv	1~2	1~2	1~2	1~2
한국국제 협력단	우크라아나 도네츠크 국립경상대학교	1~2	1~2	1~2	1~2
한국국제 협력단	우크라이나 르보프 국립대학교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루마니아 University of Bucharest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1~2	1~2	1~2	1~2
한국국제 교류재단	터키 에르지예스대학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독일 Eberhard-Karls-University of Tübingen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체코 Charles University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오스트리아 Leopold-Franzens University of Innsbruck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독일 Universität Bonn	1~2	1~2	1~2	1~2
한국국제	미국	2	2	2	2

교류재단	Ohio State University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Rice University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Rutgers University	2	2	2	2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SUNY Albany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SUNY Binghamton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SUNY Buffalo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Wellsley College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국 Yale University	2	2	2	2
한국학중앙 연구원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ton	1~2	1~2	1~2	1~2
한국학중앙 연구원	미국 Emory University	1~2	1~2	1~2	1~2
한국국제교 류재단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	1	1	1
한국국제 교류재단	멕시코 Colegio de Mexico	1	1	1	1
한국학중앙 연구원	멕시코 University Autonomous of Nayarit	1~2	1~2	1~2	1~2
국제협력단	페루 UNSAAC대학	1	1	1	1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 of Sydney	2	2	2	2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 of New South Wales	2	2	2	2
한국국제교류재단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1	1	1	1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로코 모하메드 5세 대학	1~2	1~2	1~2	1~2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집트 아인샴스대	3	3	3	3
총 수		77~109	77~109	77~109	77~109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외대학으로 한국학 또는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주된 기관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이다. 최근 몇 년간의 이들 기관들의 파견 실적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해당 국외대학으로 연간 동일한 수의 인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간 77~109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1.2.3. 한국 교육원[22)]

1) 양적 현황

<표 27> 한국 교육원 한국어 교원 수

파견 기관	교육 기관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수 (명)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고베한국종합교육원	53

22) 국외 한국 교육원에 관한 자료는 국제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ed.go.kr)를 참고하였다.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교토한국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기후한국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나가노한국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니가타한국교육원	1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동경한국종합교육원	3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삿포로한국교육원	14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센다이한국교육원	6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오사카한국종합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치바(千葉)한국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후일본 쿠오카한국종합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히로시마한국교육원	53
국제교육진흥원	프랑스 프랑스한국교육원	60
국제교육진흥원	독일 독일한국교육원	226
국제교육진흥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58
국제교육진흥원	러시아 사할린한국교육원	58
국제교육진흥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한국교육원	17
국제교육진흥원	영국 영국한국교육원	176
국제교육진흥원	캐나다 캐나다한국교육원	660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LA. 한국교육원	2310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뉴욕한국교육원	1944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시카고한국교육원	916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워싱턴한국교육원	646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휴스턴한국교육원	639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시드니한국교육원	365
	합계	8,629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외 한국 교육원은 국제교육진흥원에 의해 운영되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 수가 기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여준다. 이 교원의 수가 한국어 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인지 아니면 행정 요원의 수가 합산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한국 교육원의 교원은 한국으로부터 파견된 교원과 현지 교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표에서는 파견 교원의 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표 28> 한국 교육원 교원의 자격 요건

파견 기관	교육 기관명	한국 교육원 교원의 자격 요건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국어교사 자격증 ※ 국어국문학과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고베한국종합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교토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기후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나가노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니가타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동경한국종합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삿포로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센다이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오사카한국종합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일본 치바(千葉)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후일본 쿠오카한국종합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히로시마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프랑스 프랑스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독일 독일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러시아 사할린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영국 영국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캐나다 캐나다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LA. 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뉴욕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시카고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워싱턴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휴스턴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미국 시드니한국교육원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학력, 교육 경력은 조사할 수가 없었다.

2.1.2.4. 기타

한국에서 교원을 직접 파견하지 않는 대표적 한국어 교육 기관이 국외 한글 학교이다. 이밖에 다른 기관도 존재하다. 여기에서는 한글 학교와 다른 기관들로 대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글 학교

1) 양적 현황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 곳곳에 한글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는 한글 학교는 총 2,097개교로 14,172명의 교원이 127,184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23] 다음의 <표 29>는 일부 국가의 한글 학교 교원 수를 보여주고 있다.

23) 이 수치는 재외동포재단(2007)을 참고하였다.

<표 29> 국가별 한글 학교의 한국어 교원 수[24)]

국가 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일본	107
카자흐스탄	268
우즈베키스탄	146
방글라데시	22
부르나이	5
중국	161
홍콩	22
캄보디아	8
피지	10
인도	47
인도네시아	19
말레이시아	7
네팔	15
미얀마	7
파키스탄	2
필리핀	105
싱가포르	14
스리랑카	18

24) 이 자료는 국제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ed.go.kr)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태국	16
대만	2
베트남	13
몽골	9
캐나다	476
아르헨티나	41
브라질	135
호주	276

<표 29>는 일부 자료이며 보완되어야 한다.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한국에서 현지 한글 학교로 파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글 학교의 교원은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못하다. 한글 학교 교원이 의무적으로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 기타 기관[25)]

1) 양적 현황

<표 30>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원 수

파견 기관	교육 기관 명	2007년 현재 재직 중인 총교원 수(명)
국제교육진흥원	한빈한국기업인재중심	10

25) 국외 한국어 기타 기관에 관한 자료는 국제교육진흥원(http://www.ied.go.kr), 한국국제협력단(http://www.koica.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	방글라데시 해외취업복지청 산하 기관	2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학교	1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제2 언어학교	1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깜퐁츠낭 직업훈련원	1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끄라쩨 직업훈련원	1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바탐방 관광부	1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씨엠립 직업훈련원	1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프레이벵 직업훈련원	1
한국국제협력단	파키스탄 인력송출정부기관	4
한국국제협력단	우크라이나 끄라스노페레꼽스크 시청	1
	합계	24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2.2

<표 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기관은 주로 현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주로 현지 업무나 한국으로의 노동자 파견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설치된 기관들이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표 31>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 요건

파견 기관	교육 기관명	한국 교육원 교원의 자격 요건
국제교육진흥원	한빈한국기업인재중심	자료를 찾을 수 없음

한국국제협력단	방글라데시 해외취업복지청 산하 기관	· 관련학과 졸업 · 자격증 소지자 ·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학교	· 전공학과 졸업 · 교사자격증 소지자 ·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제2 언어학교	· 대졸 · 경력 2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깜퐁츠낭 직업훈련원	· 대졸 ·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끄라쩨 직업훈련원	· 대졸 ·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바탐방 관광부	· 대졸 ·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씨엠립 직업훈련원	· 대졸 ·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프레이벵 직업훈련원	· 대졸 · 경력 3년 이상
한국국제협력단	파키스탄 인력송출정부기관	· 관련학과 졸업 · 경력자
한국국제협력단	우크라이나 끄라스노페레꼽스크 시청	· 경력 3년 이상

<표 31>은 이들 기관에 채용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보여주는데 어느 기관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의 현황, 즉 교원의 수, 그들의 자격 보유 여부와 자격 종류, 학력 및 교육 경력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을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대별한 후 다시 전자를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일반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 기관, 한국어 학원으로 나누고 후자를 세종 학당, 국외대학, 한국 교육원, 기타 기관으로 나누어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2.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 현황[26)]

여기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 보유 현황과 향후 4년간 교원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교원의 수요 공급 분석 및 평가를 위함이다.

1) 기 자격 소유자

<표 32> 기 자격 보유자 수

연도별 급수	연도별 인원(명)	급수별 합계(명)
2006연도 2급	269	454
2007연도 2급	185	
2006연도 3급	599	1,053
2007연도 3급	454	
2007연도 3급(2차 합격자)	477	477
합계		1,984

<표 32>는 2006년도와 2007년에 시행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에 의해 2급과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수와 2006년에 시행된 제1차 한국어교원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2007년에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인원수를 보여준다.

<표 33> 기 자격 소유자의 학력

기 자격 소유자 학력	인원 수(명)	비율(%)

26)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 현황은 '2007년도 한국어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중간 보고서(국립국어원)'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검정고시	0	0
전문대학 재학	0	0
전문대학 졸업	0	0
4년제 대학 재학	0	0
4년제 대학 졸업	60	11.63
석사 과정 재학	24	4.65
석사 과정 수료	36	6.98
석사 과정 졸업	204	39.53
박사 과정 재학	56	10.85
박사 과정 수료	76	14.73
박사 과정 졸업	60	11.63
기타	0	0
무응답	0	0
합계	516	100

<표 33>은 총 자격증 소지자 1,984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을 때 답변을 한 516명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석사 과정 졸업'이 39.53%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박사 과정 수료 14,73%, 박사 과정 졸업 11.63%/4년제 대학 졸업 11.63%, 박사 과정 재학 10.85%, 석사 과정 수료 6.98%, 석사 과정 재학 4.65% 순이다. 자격증 소지자들이 상당한 고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2006년도와 2007년에 시행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에 기존 한국어 교육 학계에 몸담고 있었던 고학력 인력들이 대부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부나 대학원 석사과정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학사나 석사

의 학위를 가진 교원 자격 소지자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 기 자격 소유자의 경력

기 자격 소유자 경력	인원 수(명)	비율(%)
1년 미만	32	6.20
1년 이상 ~ 2년 미만	72	13.95
2년 이상 ~ 3년 미만	32	6.20
3년 이상 ~ 4년 미만	60	11.63
4년 이상 ~ 5년 미만	36	6.98
5년 이상	76	14.73
기타	8	1.55
무응답	200	38.76
합계	516	100

<표 34> 역시 총 자격증 소지자 1,984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을 때 답변을 한 516명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5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14.73%이다. 그 뒤로 1년 이상 ~ 2년 미만 13.95%, 3년 이상 ~ 4년 미만 11.63%, 4년 이상 ~ 5년 미만 6.98%, 2년 이상 ~ 3년 미만 6.20%/1년 미만 6.20% 순이다. 5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 역시 2006년도와 2007년에 시행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에 기존 한국어 교육 학계에 몸담고 있었던 고학력 인력들이 대부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기 자격 소유자의 현직 종사 여부

기 자격 소유자 현직 종사 여부	인원 수(명)	비율(%)
현재 종사하고 있음	324	62.79

현재 종사하지 않음	앞으로 종사할 예정	124	24.03
	앞으로도 종사할 예정 없음	48	9.30
기타		20	3.78
합계		516	100

<표 35>는 기 자격 소유자의 현직 종사 여부에 관한 것인데 현재 종사하고 있음이 62.79%, 앞으로 종사할 예정이 24.03%이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인 교원들에게 한국어 교원으로 종사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감을 보여 준다. 한편, 앞으로도 한국어 교원으로 종사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비율이 9.30%인데 이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다른 일반 자격증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향후 5년간 자격 보유 예상 인원 수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2급과 3급의 자격증을 향후 4년 간 새롭게 보유하게 될 예상 인원 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2급 보유 예상 인원수를 추정해 보도록 하자. 전술한 <표 32>를 참고해 보면 연도별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2006년(269명)과 2007년(185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는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06년에 이르러 일시에 자격증을 신청한 결과이며 따라서 2006년보다는 2007년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연간 평균 자격증 소지자 수를 예상하는 데에 보다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자격증 소지자 수에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2급 자격증을 신청한 학부나 대학원생이 포함되어 있다. 학부, 대학원생, 경력 교사들의 수까지 포함하여 2008년 이후 연도별로 배출될 한국어 교원 2급 소지자의 수를 연 300명 정도로 추정한다면 <표 36>에서와 같이 향후 4년 간 대략 1,200명의 보유 인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6> 향후 4년간 2급 자격증 보유 예상 인원

연도 / 인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예상 인원(명)	300	300	300	200	1,200

3급 자격증 보유자의 수를 예상할 때에는 2급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어 교원능력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을 보유하게 되는 인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표 32>에 따르면 2006년 자격증 보유자는 599명이다. 2007년에 교원 자격 심사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게 된 인원이 454명이며 한국어 교원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보유하게 될 인원이 477명이다.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인원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한국어세계화재단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 한국어 교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 수가 2007년의 인원 수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계속 교원 자격 심사와 교원능력 검정시험이 시행될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도별 3급 자격 예상 보유자 수를 대략 900(454+477)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7>에서와 같이 향후 5년간 대략 4,500명(900명 X 4년 = 3,600명)이 3급 자격증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표 37> 향후 4년간 3급 자격증 보유 예상 인원

연도 / 인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예상 인원(명)	900	900	900	900	3,600

2.3. 수요 공급 분석 및 평가

이제까지 교원의 수, 교원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을 중심으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4년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게 될 인원의 수도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부터는 한국어 교원의 수요 공급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 현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기관이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존재했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의 수요 공급 분석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을 한국어교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세종 학당, 국외대학, 한국교육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학원 등이 있으며 후자의 교육 기관으로는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일반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 기관, 한글학교 등이 있다.

-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교육 기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16개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표본 기관의 교원 수는 기관 당 평균 25명이며 이를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교와 기타 6개교를 합한 수인 60을 곱하여 대략 1,500명의 총 교원 수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교육 기관에 따라 교원 자격 보유 현황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본 조사에 따르면 대략 전체 교원의 50.87%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경력을 조사해 보았는데 '2년 이상~3년 미만'의 교원 수가 가장 많았다. 표본 조사를 통해 대학 기관에서 향후 4년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를 예측해 보았는데 2008년 513명, 2009년 580명, 2010년 671명, 2011년 664명으로 총 2,428명에 이르렀다.

<표 38> 향후 4년간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원 수요 예상치[27]

연도 / 인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예상 인원(명)	513	580	671	664	2,428

27) 이 자료에 대해서는 <표 4> 참고.

[세종학당]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세종학당에서 필요로 한 파견 교원 수는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포함하여 총 18명이다.[28] 한편 세종학당 교원의 자격증 보유 비율은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만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100%라 할 수 있다. 한편, 향후 4년간 세종 학당이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견 한국어 교원의 수는 2008년 36명, 2009년 54명, 2010년 77명, 2011년 100명으로 총 267명이다.[29]

<표 39> 향후 4년간의 세종학당 파견 교원 수요 예상치

연도 / 인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예상 인원(명)	36	54	77	100	267

[국외대학]

국외대학으로 연간 파견되는 교원 수는 대학 당 1.1~1.6명이며 2007년 파견 총 교원 수는 77~109명이다.[30] 이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지원을 받고 파견되는데 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점차 한국어 교육학 석사 학위 이상이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를 파견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지원 기관에서 국외대학에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으로 교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다면 연간 77~109명씩 향후 4년간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원 수는 372(308~436)명이다.[31]

28) <표 22> 참고.
29) <표 23> 참고.
30) <표 24> 참고.
31) <표 26> 참고.

<표 40> 향후 4년간의 국외 대학 파견 교원의 수요 예상치

연도 / 인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예상 인원(명)	77～109	77～109	77～109	77～109	372(308～436)

[한국 교육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며 국외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 교육원의 총교원의 수는 8,629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교원의 수가 한국어 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인지 아니면 행정 요원의 수가 합산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교육원의 교원은 한국으로부터 파견된 교원과 현지 교원으로 구성되는데 파견 교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파견 교원의 향후 4년간 채용 인원 수도 조사할 수가 없었다(2.1.2.3 참고). 파견 교원의 채용 인원 수를 조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들 대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인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표본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의 평균 교원 수는 6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식 교사들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대부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관의 특성상 향후 채용 인원을 조사할 수 없었다.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의 평균 교원 수는 3명이었다.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식 교사들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대부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관의 특성상 향후 채용 인원을 예상할 수 없었다.

[한국어 학원]

표본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학원의 평균 교원 수는 15.8명이며 전체 기관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총교원의 수를 산정할 수 없었다. 교

원 자격증 소지 여부 역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향후에는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4년 간의 채용 인원수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국내 외국인의 증가 추세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채용 인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않는 교육 기관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평균 교원 수는 18.3명인데 전체 기관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총 교원의 수는 산정할 수 없었다. 이들 중 36.8%가 교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8년에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인력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 교원들에게 교원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평균 교원 수는 5.9명인데 전체 기관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총교원의 수는 산정할 수 없었다. 이들 중 12.5%가 교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8년 기준으로 기관 당 2.8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교원들에게 교원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 역시 한국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외국인을 위한 자원 봉사 기관]

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세부 사항을 조사할 수 없었다. 이들 기관들의 교원 역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학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외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한글학교의 총교원 수는 2007년 말 현재 14,172명이었다. 한국에서 직접 한글 학교로 교원이 파견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이 주로 한글 학교 교원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교수하는 집단 역시 한국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글 학교 교원이 의무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한국어 교원의 수요 공급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배출된 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총수는 2급과 3급을 포함하여 1,984명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석사 졸업, 박사 과정 수료, 4년제 대학 졸업, 박사 과정 재학 순으로 많았으며 교육 경력은 5년 이상 경력자가 15%에 이르렀다.[32] 그리고 이들 중 향후 교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전체 인원수 1984명의 24%인 476명으로 추정된다.[33] 향후 4년간 교원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계산해 보았는데 2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1,200명, 3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3,600명으로 예상되었다.[34]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4년(2008년~2011년) 간 교원의 총 수요와 총 공급 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2) <표 32>, <표 33>, <표 34>, <표 35> 참고.

33) <표 35>에 의하면 1894명 중 응답에 참여한 인원이 516명이며 그 중 24.03%가 향후 교원으로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비율에 입각하여 기존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교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수476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1984명(전체 인원) X 0.24(앞으로 교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 = 476명'

34) <표 36>, <표 37> 참고.

<표 41> 향후 4년(2008년~2011년) 간 한국어 교원의 총 수요[35]

기관 / 인원	대학부설기관	세종학당	국외대학	총
예상 인원(명)	2,428	267	372	3,067

<표 42> 향후 4년(2008년~2011년) 간 한국어 교원의 총 공급[36]

기관 / 인원	취업을 희망하는 기 자격증 소유자	2급 자격증 소지 예정자	3급 자격증 소지 예정자	총
예상 인원(명)	476	1,200	3,600	5,276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수요는 3,067명인데 이 중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요가 2,428명, 세종학당의 수요가 267명, 국외대학의 수요가 372명이다.[37] 한편,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공급은 4,876명이다. 이 중 취업을 희망하는 기 자격증 소유자가 476명, 2급 자격증 소지 예정자가 1,200명, 3급 자격증 소지 예정자가 3,600명이다.

일견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 교육원, 한국어 학원 등의 잠재 수요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 자격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은 가능한 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어 학원 역시 조사 결과에는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35) <표 38>, <표 39>, <표 40> 참고.
36) <표 36>, <표 37> 참고.
37) 국외대학으로 파견되어 한국어를 교육하게 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외대학 교원의 수요를 총 수요에 포함시켰다.

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한국어 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 자격증에 대한 전공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세종학당, 한국어 학원 등의 기관에서는 교원 자격증 소지가 필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교, 초·중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 교육원 등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문제를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국외대학으로 파견되는 한국학 연구 인력들은 현지에서 한국학 강의뿐만 아니라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의무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기관,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관,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원들에게는 기존의 교원 자격증과 다른 성격의 새로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향후 4년간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보면 총 수요와 총 공급 사이에 일견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총 수요를 예측할 때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 세종학당 파견 교원, 국외대학 파견 교원의 수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검토 및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2조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을 검토하고,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진단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현행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국어기본법 제19조와 이에 의거해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어기본법 제1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법적 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이하 "재외 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국어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교원 1급 한국어 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 교육 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 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 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에서 한국어 교원의 자격 부여 기준을 규정한 것은 한국어교육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조항록(2007: 415~416)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어 교원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비학위과정인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이 대부분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간 수에서 120시간을 충족하고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 역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실습 등 5개 영역의 최소 이수 시간 수를 충족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학위과정, 특히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이전에 학교마다 자의적으로 구성되었던 학부과정의 교육과정도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체계화되었다.

3.2.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에 한국어 교원의 자격이

규정됨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의 기준이 1)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2)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원 수급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열린 한국어 교원 심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논의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교육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2)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가?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제13조 제1항 관련)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한가?
4) 현행 시행령에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승급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승급을 하는 데는 교육 경력 이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승급 요건으로 어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5)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다. '한국어 교원'과 구별하여 '한국어 지도사' 제도를 마련할 경우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부터 위에서 제시한 논의 과제를 하나씩 검토해 가며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자격 부여 기준

<논의 과제 1> 한국어 교육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복수전공 포함)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칙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와 한국어 교육 경력자, 단기 과정 연수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모두에게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분류표에도 이미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며, 국내에 학부 과정으로 7개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10여개 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으로 20여개 교에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여기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는 약 3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이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고 전공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교육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전공자에게 해당 분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자격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 시행령이 일정 자격을 갖춘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배출이 충분한 현 시점에서는 자격 부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그 중에서도 대학 부설 한

국어 교육 기관이나 국외 파견 교사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될 한국어 교육 전공자 수와 교원의 총 수요를 비교해 볼 때(<표 41>, <표 42>)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한국어 교원' 자격이 요구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요에 대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 전문학과가 아닌 학과에서 한국어 교육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유관 학과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필요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학점 취득 요건만으로 볼 때는 한국어 교원 2급이나 3급 자격을 취득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갖지 않은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해 필요 학점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가 아닌 국어국문학과나 연계 전공 등에서 주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한국어 교원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든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가 졸업장에 한국어 교육학 전공으로 전공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학과명이나 전공명을 바꾸고,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수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전공학과가 아닌 곳에서 주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한국어 교원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든 취득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와 마찬가지의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는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전공자(복수전공 포함)와 부전공자로 구분해 2급과 3급 자격을 부여하며, 필수 취득 학점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3>에서 다시 논의한다.

2) 비전공자에게는 '한국어 교원'이 아닌 다른 자격을 신설하여 한국어 교육 자격을 부여한다.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2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1)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큰 자산이며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2>에서 함께 논한다.

<논의 과제 2>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가?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나 (2) 시행령 시행 전에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만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제 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현행 시행령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던 1), 2)에 해당하는 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가 아니므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의 대학 부설 교육기관을 비롯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기관, 이주노동자 교육기관 및 국외의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

학교 등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일정한 한국어 교육 역량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했거나 체계를 갖춘 신뢰할 만한 교육기관에서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한국어 교육의 준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한국어교육 유관학과나 유관학과가 연계해 만든 협동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을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일정 수준의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그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자격(가칭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행령에서는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했거나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3급 자격을 부여했으나, '한국어 지도사' 자격 부여의 기준은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지도사' 자격은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구분되므로, 현행 시행령의 3급 자격 부여 기준보다는 완화시켜 일정 정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거나 (2)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아니나 한국어교육 유관학과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한 자 중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시험 문항의 수준을 낮추고 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국어 교육 전공자나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 120시간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

격한 자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교육 전공학과가 아닌 유관학과에서, 혹은 유관학과가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전공을 독립 전공으로 설정해 운영하지 않고 교육과정만을 개설해 운영하는 대학이 있으며, 이러한 학과에서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지금까지는 취득 학점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관학과나 유관학과가 연계해 만든 협동과정에서 공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경우는 주전공의 경우 최소 720시간(45학점), 부전공의 경우 최소 336시간(21학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120시간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한국어 교원'이 아닌 '한국어 지도사'로 변경하는 경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현행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 관련 지식과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폭 넓게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어 교육 전공자 수준에서 엄격히 실시되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 시험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문항의 수준을 낮추고 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도 대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한다.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자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경력을 '시행령 시행 전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경력을 국내외 대학에서의 경력만으로 제한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는 체계적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활용해 한국

어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기 위하여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숱한 지적을 받아 온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실시된다.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교육 기관, 즉 국내의 국제교육진흥원이나 외국인학교, 국외의 중고등학교, 한국교육원, 한국 문화원, 한국학교 등에서는 물론 국내의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대상 교육 기관, 국외의 한글학교 등에서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은 전문성이나 체계성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길고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런 만큼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한국어 교사들은 해당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익히고 개발하여,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가진 후에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의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각종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해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한글학교 한국어 지도사,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지도사, 이주노동자 한국어 지도사, 중국에서의 한국어 지도사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교사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관은 국립국어원에 등록하여 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800시간은 한국어 교육자로서 일정한 자질을 갖추기에는 너무 많은 교육 시간이다. 800시간 이상의 경력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이 아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이 기준은 변경되어야 한다.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대상자는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의 주당 교육 시간은 대

체로 2~4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3년 정도 교육하면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3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교육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한국어 지도사' 제도의 마련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령 이전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교육 경력도 모두 인정한다. 다만, '한국어 지도사' 자격 발급 신청 시점에서 7년 이내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한다. 즉 자격 발급 신청 시점에서 7년 이내의 교육 경력이 30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런데 300시간의 교육 경력을 이용해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어 교육 이론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학 영역의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3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들이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섯 개 영역 중 현직 교사에게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38] 전체 교육 시간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60시간이 적절할 것이다.[39]

---

38) [별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 한국어 교육자는 재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9)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다.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먼저 국립국어원이나 국립국어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정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 시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에게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일정 시간 한국어 교수법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도 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는 자신의 모국어를 활용해 같은 언어권이나 문화권에서 온 후배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으며, 문화 비교적 관점에서 또한 자신의 한국 적응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교사보다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선발하여[40]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41]을 실시한 후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해 한국어 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효율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한국에 정착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 학습과 문화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세종학당의 교원 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한시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세종학당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2007~2011년에 동남아시아·몽골, 중국, 서남아시

---

40) 선발의 기준으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도 말하기 능력은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

41) 교육과정은 국어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의 교육 내용 구성과 시간 수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면 될 것이다.

아에 100개교, 2012~2016년에 중동아프리카, 북미·유럽·중남미에 100개교의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42]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현지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에서 양성한 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세종학당은 교원 중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설립 연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국외 현지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많은 교원을 파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현지의 유능한 교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학당은 현지의 대학이나 문화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도 현지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대학 교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제안된 기준에 의하면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수 중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이 아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종학당'과 같이 국가에서 설치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원'이어야 하며, 한국에서 파견되는 교원의 경우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종학당'에 한국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세종학당'의 교육은 주로 현지 교원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국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자 중에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교육을 한국어 교육의 전문 능력을 갖춘 '한국어 교원'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원 중에는 오랜 기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많다. 따라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

42) 국립국어원(2007), 「2007 세종학당 백서」 p. 35.

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학의 역량 있는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시행령 수정안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은 한국어학과 관련된 오랜 연구 경력과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한국어 교원'들이 충원될 수 있을 때까지[43] 한시적으로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춘 국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적절한 교육 경력은 2,000시간인데, 이는 주당 10시간씩 40주를 교육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5년에 해당하는 교육 시간이다.

3.2.2.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

<논의 과제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제13조 제1항 관련)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한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관련). 교과목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고, 대학,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별로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43)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10~15년에는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외 대학과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표 43>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1])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 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 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학부의 경우 45학점을, 대

학원의 경우 18학점을 취득하면 되고,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 필수 이수 학점을 5개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갖추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인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취득 학점 수가 터무니없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원의 교육 능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학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이 적은 것은 총 취득 학점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의 내용 및 학점 수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학점 요건에 맞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를 총 수로 두고, 이를 영역별로 적절히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 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 학점 수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합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이수 학점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영역별로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학 영역의 경우 대학에서는 주전공자(복수전공자 포함)는 6학점, 부전공자는 3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전공자는 2과목, 부전공자는 1과목을 취득하면 된다. 한국어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한국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데 1~2과목의 수강만으로는 한국어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어학 영역의 이수 학점 수를 최소한 6~9학점으로 늘려, 이수 과목 수를 2~3과목으로라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과 통합하여 3~4학점(1~2과목)을 필수 이수 학점으로 요구하므로 한국어학 영역은 전혀 듣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학이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과는 달리 대학원은 한국어학 영역과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을 통합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필수 이수 학점을 영역 별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어학 영역에서의 필수 이수 학점은 3~4학점이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에서는 학부에서 한국어학 영역을 선수 학습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학점 취득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는 대학이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필수 이수 학점이나 시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현재 한국어학 영역과 통합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여 3~4학점으로 필수 이수 학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의 경우, 대학의 부전공과 대학원에서의 필수 이수 학점을 변경해야 한다. 대학 주 전공의 필수이수 학점이 24학점인 데 비해 부전공의 필수 이수 학점은 9학점이다. 즉, 대학에서 3과목만 수강하면 부전공을 인정받는 것인데 3과목의 수강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출 수 없다. 따라서 부전공의 필수 이수 학점을 15학점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원의 경우도 현재의 규정에는 9~10학점으로 되어 있으나 12학점으로 늘려 4~5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국 문화 영역과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은 대학과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모두 특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의 교과목을 늘려 대학에서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 이수 학점을 45학점에서 48학점으로, 부전공의 경우는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을 24학점으로 조정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44>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9학점	6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15학점	12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8학점**	**30학점**	**24학점**	**120시간**

<논의 과제 4> 현행 시행령에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승급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승급을 하는 데는 교육 경력 이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승급 요건으로 어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승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44)]

44) 현행 시행령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급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정안에서는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나. 제3호 가목(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만을 승급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 중의 교육 시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다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로 인정받아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 이외에도 교육 시간, 보수 교육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승급의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1,200시간의 교육 시간도 함께 요구된다.[45] 3년의 교육 경력과 1,200시간의 교육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승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3년 간 1,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3급 보유자는 200시간의 교육 시간을 채워야만 승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00시간의 교육 시

다. 제3호 나목(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5) 1,200시간의 교육 시간은 주당 8~10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3년 간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수이다.

간도 함께 요구된다.[46]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5년의 교육 경력과 2,000시간의 교육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승급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승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학뿐만 아니라 공교육 기관(국제교육진흥원, 초·중·고등학교, 한국학교, 세종학당, 문화원, 교육원 등)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한글학교,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 등) 등에서의 교육 경력도 승급의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단,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교사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관은 국립국어원에 등록하여 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승급에 필요한 또 다른 요건은 교사 재교육 과정의 이수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원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전문화된 교사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보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국어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 등으로 구성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승급에 필요한 재교육과정은 [별표 1]의 다섯 개 영역 중 현직 교사에게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교육 시간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0~60시간이 적절할 것이다.

3.2.3. 자격 부여자

<논의 과제 5>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다. '한국어 교원'과 구별하여 '한국어 지도사' 제도를 마련할 경우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 교부의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③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한국어 교

46) 2,000시간의 교육 시간은 주당 8~10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5년 간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수이다.

원 자격증 교부자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교부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어 지도사'의 경우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권위나 전문성 면에서 구별되므로,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2.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수정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 수정 방향의 기본 원칙

-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한국어 교원 1, 2, 3급'과 '한국어 지도사'(가칭)로 구분한다.
-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향후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여 교원 부여 자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전공자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수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린다.
- 세종학당의 교원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재교육 과정을 거쳐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한시적 규정).
- 일정 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료자에게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 한국어 교육 비전공자 중 [별표 1]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국어 지도

사' 자격을 부여한다.

- '한국어 교원' 2급 보유자가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기간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 재교육과정 이수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 대학뿐만 아니라 공교육 기관(국제교육진흥원, 초·중·고등학교, 한국학교, 세종학당, 문화원, 교육원 등)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한글학교,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 등) 등에서의 교육 경력도 한국어 교육 경력으로 인정된다.
-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자나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장이 교부한다.

<표 45> 교원 자격 부여 기준 변경 표(안)

자격	자격 부여 대상	승급 조건	자격증 발급자
교원 1급	• 2급에서 승급	교육 경력 5년 + 2,000시간 교육 + 재교육	문화관광부장관
교원 2급	• 주전공자 • 3급에서 승급	교육 경력 3년 + 1,200시간 교육 + 재교육	
교원 3급	• 부전공자 • 국외 대학에서 2,0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재교육		
한국어 지도사	•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재교육		국립국어원장

(가칭)	●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비전공자 중 필수 이수 학점 취득자+시험 ●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재교육		

한편, '한국어 교원' 및 '한국어 지도사'를 대상으로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한국어 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① 한국어 교육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정규 교육 기관
② 대학 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
③ 국어상담소

4.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및 기대 효과

4.1.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공교육 기관 및 국가 파견 기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가 대체로 부합된다. 문제는 이들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배치하는 일이다.

또한 국내외에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계층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 재외동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교육은 대개 자원봉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을 쌓은 교원들을 재교육

시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 교원을 수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해 한국어 교육자나 한국학 전문가 희망자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희망자 또는 취업 희망자 등이 주를 이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어 교육학 전공자라야 이들 학습자가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특히 국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가 다수 필요한 세종학당의 경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현지의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교원을 국내에서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파견된 교원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교원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더 나은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원들에게 소정의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해 세종학당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귀국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늘며 이들을 교육할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비전공자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초중등학교 교사 중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나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국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효율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과 교육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진 현직 교사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할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를 교육할 한국어 교원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경력

과 연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해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시간적, 경제적,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제도권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어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지방 자치 단체나 사회 단체, 기타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한국어 지도사'를 중심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훈련시켜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나 국가 기관이 파견하는 한국어 교원의 경우(파견 교사, 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한국학교 등)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해,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기대 효과

첫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전공자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한국어 지도사'(가칭) 자격을 신설하여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투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양성함으로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을 이중 언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넷째,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육 경력자에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저변에서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2007), 「2007 세종학당 백서」.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설립 기본계획」.

국립국어원(2007), 「2007년도 한국어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간 보고서」.

소라미(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주최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조항록(2007),『국어기본법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8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est.go.kr)

국제교육진흥원(http://www.ied.go.kr)

국제한국어교육학회(http://www.iakle.com)

노동부(http://www.molab.go.kr)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이중언어학회(http://www.korbiling.org)

재외동포재단(http://www.okf.or.kr)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http://www.korean-edu.net)

한국국제교류재단(http://www.kf.or.kr)

한국국제협력단(https://www.koica.go.kr),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aks.ac.kr)

국립국어원 2007-01-6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252-000111-01

연구책임자: 송 향 근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교수(언어학박사)

◆ 주요 저서

외국인의 한글 연구(공저)(1997), 태학사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공저)(2000), 박이정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3동 827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07년 12월 18일
발행일	2007년 12월 21일
인 쇄	현대문화사

국립국어원